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특약」(구 외환은행)

제1조 적용범위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또는 MMDA(증권점프예금 제외)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 6 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 종류별 이자계산 기준일에 썸하여 해당 원가일(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에 원금에 가산합니다.

1. 보통예금 및 MMDA : 매년 6 월, 12 월의 제 3 금요일
2.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제 3 금요일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③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7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제공

① 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월에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월 다음달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제②항,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를 제공합니다.

1. 전월에 이 예금으로 하나카드 또는 BC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이 입금된 경우 제 제②항,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 제공
2. 아래 요건 중 '가'를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를 제공하며, '가', '나'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②항, 제③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II 제공

항 목	우 대 요 건
가	전월에 이 예금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서, 전월에 이 예금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2건이상 있는 경우(단, 지로, CMS를 통한 자동납부에 한 함)
나	전월에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실적이 있거나, 전월에 이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는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수수료 우대서비스Ⅰ은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1. 전자금융(인터넷, 텔레뱅킹, 모바일,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당행 CD/ATM 을 이용한 마감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3.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4. 당행 CD/ATM 을 이용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③ 수수료 우대서비스Ⅱ는 다음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 회 제공합니다.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타행 CD/ATM^(주)을 이용한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주) 은행점포내 CD/ATM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한함

④ 전월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월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우대서비스 변경

①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이 가능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